



Cosmetic Industry Insights Report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목차

Part I .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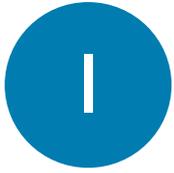
1. 제도 개요
2. 의무 대상 및 예외/면제 조건
3. 규제 대상 품목
4. 화장품 산업의 EPR 제도
[참고] 주요국 EPR 도입 현황

Part II. EPR 유형

1. 재활용 목표와 의무율
2. 비용
3. 이행 프로세스

Part III. 결론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은 생산자가 생산·판매·소비·폐기·재활용 단계에 이르는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을 지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가 부담하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생산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본 리포트에서는 EPR의 개념과 주요 국가들의 근거 법률을 토대로 EPR 대상 생산자의 기준과 유의 사항을 정리한다.



1. 제도 개요

EPR의 개념

명칭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의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해당 폐기물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재활용 부과금을 부여하는 제도

EPR의 핵심은 생산자에게 생산·판매 단계를 넘어 소비·폐기·재활용 단계까지 책임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생산자는 제품 설계 단계부터 경량화와 단일 소재 설계 등을 고려하고, 최대한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하게 제조하여,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국가별로 EPR 운영구조와 책임 주체는 다르지만, 생산 단계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폐기 후 효율적인 재활용을 통해 순환경제 실현과 환경 영향 저감이라는 방향성은 동일하다.

생산자 책임 의무 범위 확대



2. 의무 대상 및 예외/면제 조건

EPR에서는 ‘생산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지역별로 ‘생산자’의 요건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포장재의 제조·판매 주체와, 이를 유통·수입 주체가 ‘생산자’에 해당한다.

국가		생산자 정의				
한국 ¹⁾		구분	분류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	발포합성수지	유리병
		제조·판매업체 (A, B 모두 충족)	매출액(A)	10억 이상	10억 이상	10억 이상
			출고량(B)	4톤 이상	0.8톤 이상	10톤 이상
		수입업체 (A, B 모두 충족)	수입액(A)	3억 이상	3억 이상	3억 이상
			수입량(B)	1톤 이상	0.3톤 이상	3톤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수입액 기준, 출고·수입량 기준 둘 중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 ✓ 면제대상의 경우에도 전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은 법적의무사항(제출하여 의무면제대상 입증 필요) 						
유럽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영토 내에서 포장재를 최초로 공급하는 해당 제조, 유통 또는 수입업체 ✓ 연간 10톤 미만인 경우에도 면제가 아닌, 간소화된 ‘정보 제출’ 의무 보유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적으로 포장재를 시장에 최초로 출시한 생산자²⁾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이나 그 제조에 사용되는 요소 및 재료를 개발, 제조, 취급, 가공, 판매 또는 수입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 				
미국	오리건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로 제품이나 포장재를 판매, 유통,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 ✓ 소규모 생산자(비영리 단체, 공공기관, 연간 매출 500만 달러 미만, 연간 판매량 1톤 미만 생산자) 예외 존재 				
	캘리포니아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 판매, 유통, 수입하는 브랜드·라이선스 소유자 또는 업체 				

Q. 동일한 포장재에 대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중복하여 재활용 의무를 가지나요?

아니요! 중복하여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문생산(OEM)을 하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경우에도, 브랜드 상표 소유권자인 화장품 판매업체가 재활용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EPR 의무 대상의 기본 원칙은 ‘포장재를 선택하는 최종 결정권자’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EPR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재활용 의무의 중복 부담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책임 이행을 위해 하나의 명확한 책임 주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1)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2) 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거래 수준에 상관없이 포장재를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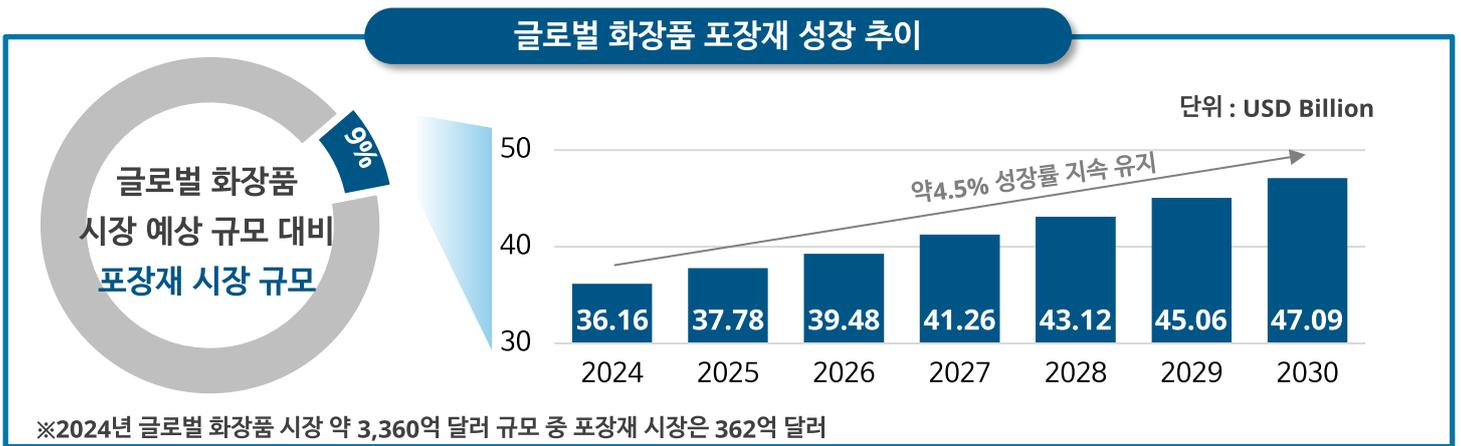
3. 규제 대상 품목

EPR은 각 국가·지역별로 규제 대상 품목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가·지역에서 포장재는 핵심적인 규제 대상이며, 특히, 소비자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화장품의 포장재가 대표적인 항목이다.



4. 화장품 산업의 EPR 제도

2024년 글로벌 화장품 시장¹⁾의 규모는 약 미화 3,360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에 비해, 화장품 포장재 시장 규모는 약 362억 달러로, 향후 10년간 연 4.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²⁾ 이런 성장과 발맞춰, 주요 국가들은 전 주기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포장재 개발과 생산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포장재의 경량화, 과대 포장 금지, 그리고 재질과 구조 변경을 통해 포장재의 재사용 및 재활용 비율을 높이려 하며, 이러한 책임과 비용에 대한 EPR 규제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각 국가들의 EPR 규제와 운영방식은 상이하므로, 국내 화장품 수출 업체들에게는 무역 장벽 또는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EPR과 같은 규제 대응을 위해, 화장품 업체들은 재질 뿐 아니라 포장 방식에서도 혁신을 꾀하여, 지속가능한 포장재 디자인과 폐기물의 최소화라는 명목 하에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친환경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 K-뷰티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과 유럽으로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수입 화장품 시장의 K-뷰티 비중은 2025년 기준 프랑스를 넘어서 1위를 달성하였다.³⁾ 이렇듯, 미국과 유럽 진출 시, 국가마다 상이한 EPR 제도를 포함하여 친환경적 포장재로의 전환을 통해, 규제 대응 또한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비관세 장벽을 원활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무엇보다, 규제에 따른 다른 프로세스 및 비용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럽은 EPR 제도 미준수 시 시장 접근 차단이라는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각 주별로 EPR 제도에 대한 적용 여부가 다르지만 오리건 주의 경우, 각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EPR 부과금이 친환경 인센티브(Eco-Modulation)에 따라 결정되어, 높은 재활용성 등급의 포장재 양이 많은 경우,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리포트에서는 유럽의 주요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미국의 오리건 주와 캘리포니아 주에서 도입한 EPR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Cosmetics Market, BFORUNE, 2025](#)
 2) [Towards Packaging, Cosmetic Packaging Market 2025 Global Size, Growth, Trends, Forecast to 2034](#)
 3) [하나증권, 화장품 해외 진출 다변화 기회 요인 확대, 2025](#)
 4) [하나증권, 화장품 해외 진출 다변화 기회 요인 확대, 2025](#)

[참고] 주요국 EPR 도입 현황

한국의 2024년 국가별 화장품 수출 실적 상위 20개국(전체 수출 실적 점유율 88%)¹⁾의 EPR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EPR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미운영 국가 또한 향후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해외 시장 진출 시, 국가마다 상이한 EPR 제도에 대해 개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위	국가명	EPR 제도	도입여부	근거법률(또는 정책 문서)
1	중국	도입 예정	2025년 목표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Prevention and Control of Environmental Pollution by Solid Waste
2	미국	운영 (일부)	2021-2024년 (주별 상이)	주별 EPR 법률 *메인,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오리건, 콜로라도, 미네소타, 메릴랜드(이외 운영 예정인 주도 있음 ²⁾)
3	일본	운영	1997-2000년	Act on the Promotion of Sorted Collection and Recycling of Containers and Packaging
4	홍콩	운영	2004년	Producer Responsibility Schemes *화장품 포장재 제외(폐전기전자제품 중심)
5	베트남	운영	2022년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2020, Decree 05/2025/ND-CP
6	러시아 연방	운영	2020년	Federal Law No. 89-ФЗ "On Production and Consumption Waste"
7	대만	운영	1988-1997년	Waste Disposal Act
8	태국	도입 예정	2027년 예정	Draft Sustainable Packaging Management Act
9	아랍에미리트 연합	운영	2025년(현재 시범사업 운영)	UAE Integrated Waste Management Agenda 2023-2026
10	싱가포르	운영	2019년	Resource Sustainability Act
11	말레이시아	도입 예정	2030년	Circular Economy Policy Framework for the Manufacturing Sector in Malaysia (2024)
12	영국	운영	1997년	Producer Responsibility Obligations (Packaging Waste) Regulations(2024년에 개정됨)
13	인도네시아	운영	2019년	Ministry Regulation No. 75/2019
14	폴란드	운영	2002년	The Obligations Of Entrepreneurs In The Management Of Certain Wastes And Products
15	캐나다	운영 (일부)	2008~2025년 (주별 상이)	주정부별 EPR 법률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퀘벡, 온타리오, 매니토바, 서스캐처원,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유콘
16	호주	운영	2011	N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Used Packaging Materials) Measure 2011 (NEPM)
17	카자흐스탄	운영	2017년	Amendment Of The 2007 Environmental Code
18	네덜란드	운영	2012년	The Framework Agreement on Packaging
19	필리핀	운영	2022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Act of 2022 (Republic Act 11898)
20	키르기스스탄	운영	2023년	Law on Production and Consumption Waste

1) 식품의약품안전처, '24년 화장품 생산·수출액, 모두 사상 최대실적 기록', 2025

2) 하와이, 일리노이, 뉴욕,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EPR 유형

국가·지역별로 EPR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국내에서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대한 의무를 지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회수·재활용에 대한 활동을 이행하는 한편, 생산자책임이행기구인 PRO(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가 생산자의 목표 설정을 하고 책임과 비용을 부과하는 국가도 있다. 이런 면에서, 한국과 비교하여, 유럽에서 가장 먼저 EPR을 도입한 독일과 프랑스, 미국에서 EPR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을 중심으로 목표와 재활용 의무율, 비용, 이행 프로세스를 비교 분석하였다.



1. 재활용 목표와 의무율

한국과 유럽(독일, 프랑스), 미국(캘리포니아, 오리건)에서는 EPR 제도 운영을 위한 재활용 목표와 의무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가·지역마다 목표의 범위와 정도가 다르다. 한국은 2027년 장기 목표 대비 현재 완화된 의무를 부여하여 국가적으로 점차 의무율을 높여 나가는 단계적 경로를 보이는 반면, 유럽(독일, 프랑스)은 국가적 목표 대비 현재 강화된 재활용 의무율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상이하다. 캘리포니아 주는 아직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목표만을 수립하였다.

① 한국의 재활용 목표율과 의무율

한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를 기반으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거량, 회수·재활용 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장기 재활용 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따라 의무 이행년도의 전년도 12월마다 연도별 **재활용 의무율**을 고시하고 있다.

한국의 재활용 목표율 및 의무율¹⁾

품 목		2027년도 장기 재활용 목표율 ²⁾	2025년 재활용 의무율 ³⁾	
금속캔	철 캔	87.9%	87.2%	
	알루미늄캔	82.9%	81.3%	
유 리 병		79.9%	75.8%	
종이팩	일반팩	58.8%	29.3%	
	멸균팩	17.2%	14.6%	
합성수지 포장재	폴리에틸렌 텔레프탈 레이트병	단일무색	84.6%	
		단일유색	86.4%	
		복합재질	89.5%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87.1%	87.1%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63.0%	52.7%
	단일, 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77.1%	43.4%
	기타	용기류, 트레이 단일재질	89.5%	89.5%
	합성수지	복합재질 및 필름, 시트형, 단일, 복합재질	90.0%	90.0%
	유탄유용기		86.9%	84.0%

개별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량은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 연도 출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재활용 의무량을 기업이 준수하지 못했을 때, 미이행된 재활용 의무량에 비례하여 부과금이 산정된다. 따라서, 국내 EPR 제도는 기본적으로 재활용 이행량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활용 의무량 산정식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과 재활용의무율은 소수점으로 표기
 2) 2027년 제품·포장재별 장기 재활용목표율(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3)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② EU PPWR과 독일·프랑스의 목표와 의무

2026년 8월부터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이하 PPWR¹⁾)이 발효되면서 EU 내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직접 적용될 예정이다. EU PPWR에서 고시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과 재활용 의무율을 볼 때, 독일은 신포장재법(이하 VerpackG)에서 이미 PPWR에 상응하는 포장재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다. 다만, PRO에 적용된 목표율이 재질별로 설정된 PPWR 목표율과 비교했을 때 더 강화된 성격을 보여, 포장재 생산자의 부담은 비교적 클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환경법규(이하 C. env.²⁾)의 하위 규범 성격을 가진 [Arrêté du 7 décembre 2023](#)에서 가정용 포장에 대해 상회하는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재활용 목표율

EU PPWR 기준이 독일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일부 항목이 더 강화된 목표로 적용

EU PPWR 제52조		VerpackG 제1조		Arrêté du 7 décembre 2023 제5.5.1조	
재료별 재활용 목표율	2025년	재료별 재활용 목표율	2025년	재료별 재활용 목표율	2025년
플라스틱	50%	플라스틱	50%	플라스틱	50%
목재	25%	목재	25%	목재 ³⁾	-
철·금속	70%	철·금속	70%	철·금속	80%(+10%)
알루미늄	50%	알루미늄	50%	알루미늄	50%
유리	70%	유리	70%	유리	80%(+10%)
종이(판지)	75%	종이(판지)	75%	종이(판지)	75%

독일 PRO에게 적용되는 의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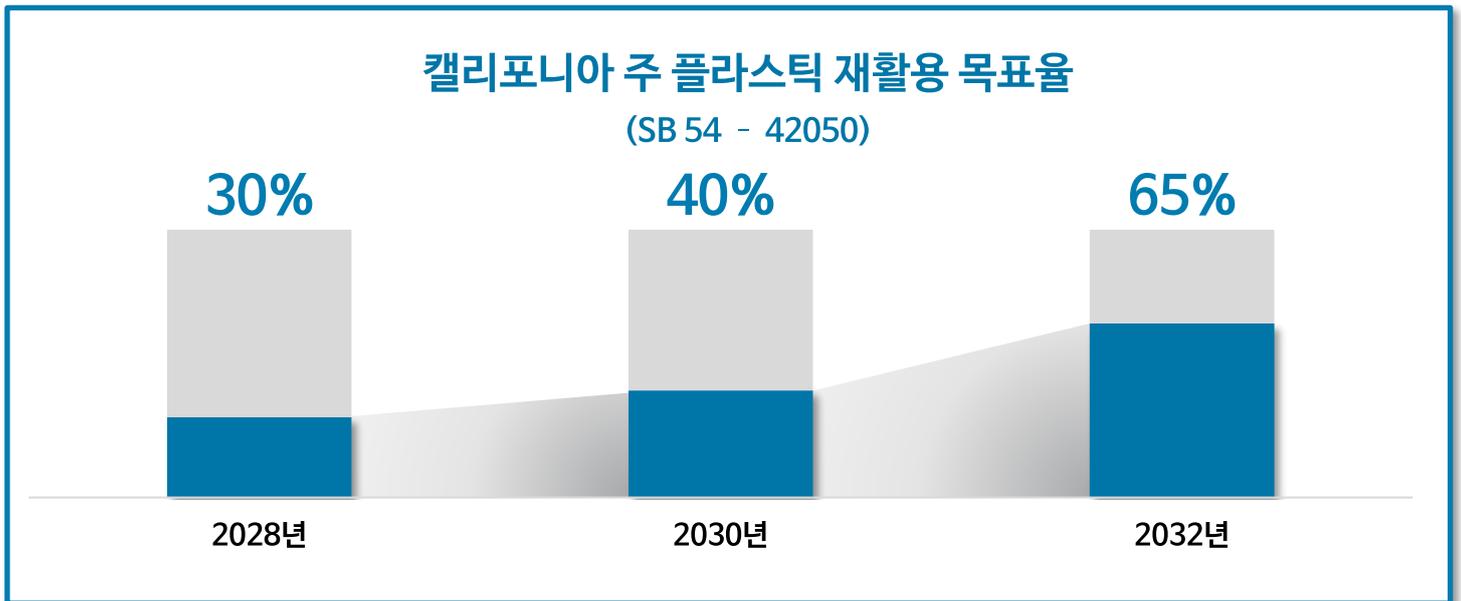
VerpackG 제16조		VerpackG 제1조 2025년 목표 대비	독일 재활용 의무율 특징
재료별 재활용 의무율	2022년~		
플라스틱 ⁴⁾	90%	+40%	1. 생산자(기업)이 아닌 PRO에게 책임 부여 2. 목표율 대비 강화된 의무율 부여 독일에 진출하는 생산자(기업)는 PRO에게 적용되는 의무율에 상응하는 재활용 목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VerpackG 제7조에 의해 1개 이상의 PRO 시스템이 참여 의무 보유)
목재	-	-	
철금속	90%	+20%	
알루미늄	90%	+40%	
유리	90%	+20%	
종이(판지)	90%	+15%	

※프랑스의 PRO의 경우, C. env. 제541-1조에 명시된 목표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는 본 보고서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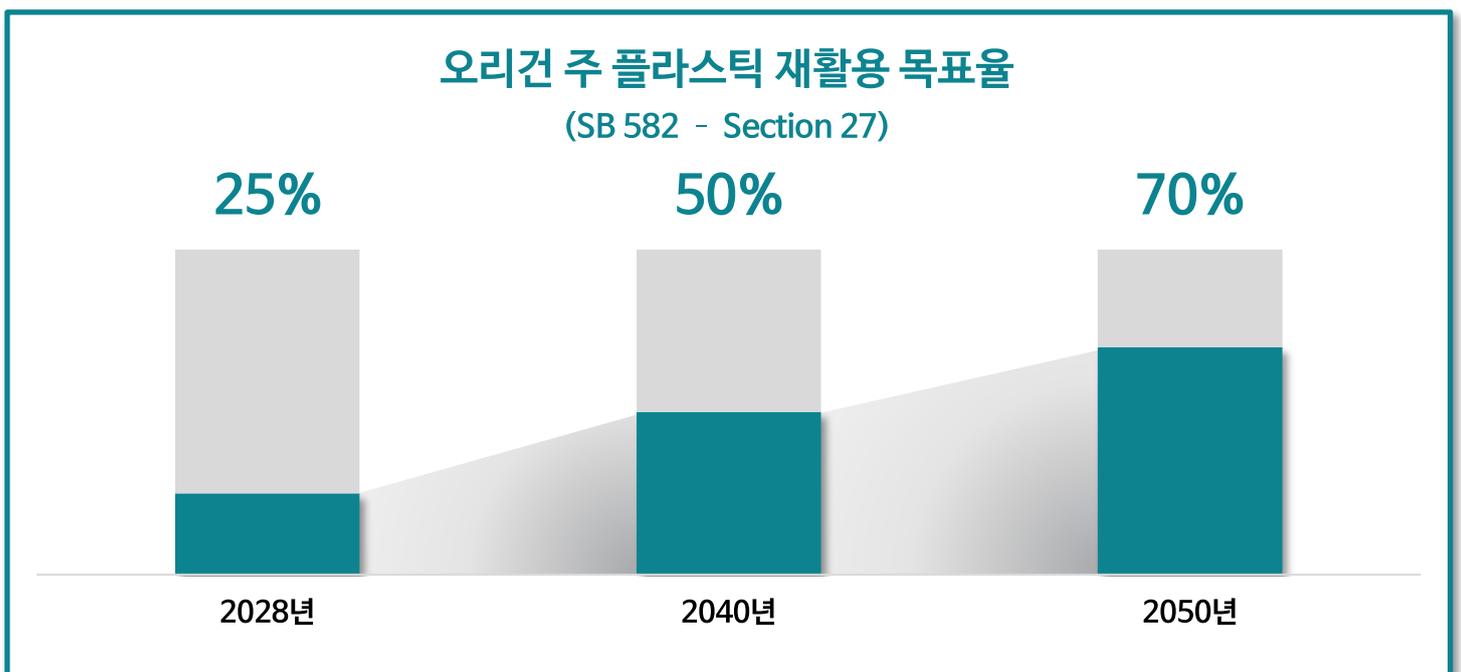
1)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2) Code de l'environnement
 3) 향후 PPWR 기준에 맞추어 개정될 것으로 예상
 4) 플라스틱 감축 목표 이행 시, 재활용의 70%는 기계적 재활용을 통해 확보 필수

③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리건 주의 목표율

미국은 주별로 EPR 제도를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는 SB 54¹⁾, 오리건 주는 SB 582²⁾을 통해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 목표율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율은 주별 법률에 구체적인 목표 연도 및 수치가 기재되어 있으며, 목표율은 동시에 생산자와 PRO가 따라야 하는 의무율로 작용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생산자는 PRO와 함께 포장재 경량화, 재활용성 개선, PCR 사용 확대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캘리포니아 자원재활용회복부(CalRecycle)가 관리·감독하며, 의무율 미달 시, PRO는 이행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내 유일한 PRO인 ‘Circular Action Alliance(CAA)’는 제품의 종류 및 무게, 재활용성, 재활용 인프라 구축, 수거 및 처리 시스템 운영 등의 다양한 시장 요건을 고려한 총 비용을 산정해, 개별 생산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식이다.



오리건은 환경품질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DEQ)가 매년 전년도 주 차원의 재활용 목표 달성 여부를 PRO를 통해 검증한다. 2050년까지 목표율은 단계적으로 설정되었으며, 2038년 이후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1) 2022년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재 생산자 책임 법안(Plastic Pollution Prevention and Packaging Producer Responsibility Act)
 2) 2021년에 통과된 SB 582는 재활용 현대화법(Recycling Modernization Act)으로 재활용 대상 품목을 포장재 (플라스틱, 종이, 유리, 금속 등), 음식 서비스 용품과 인쇄 및 필기 용지까지 범위 확대하여, EPR과 연계하여 재활용 기준을 통일하고 책임을 부과

2. 비용

한국과 유럽(독일, 프랑스), 미국(캘리포니아, 오리건)에서는 EPR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의무 납부 항목으로 분담금, 부과금, 장려금(인센티브)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장려금 혹은 벌칙금처럼 비용 금액의 차등화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분담금은 물론 재활용 의무량에 대비하여 미이행된 목표치에 비례한 부과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① 한국의 분담금과 부과금

국내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PRO)이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면서, 개별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원화된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생산자는 재활용 목표율과 의무율을 준수하기 위해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지급해야 한다. 이때, 분담금은 출고·수입실적이 차년도에 확정됨에 따라 당해연도에 산정액을 미리 지불하고, 전년도 정산액으로 추가 또는 감면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무 납부 항목



*출고·수입실적은 의무이행 다음연도에 확정되어, 해당연도 예상 실적으로 산출·고지 후 다음연도에 정산→“정산금(차액)” 발생

기업이 재활용 분담금을 부담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인센티브와 재질개선 분담금이다. 이는 포장재의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기반으로 결정된 등급에 따라 산정한다. '재활용 최우수' 등급의 포장재 실적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실적에 비례하여 재질개선 분담금을 부과한다.

재활용성에 따른 인센티브와 재질개선분담금



해당 시, 납부항목

부과금은 분담금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부과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재활용 미이행량에 최대 30%까지 가산되어 정해진다. 부과금 이외에도 EPR 관련 의무 항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미이행량 = 재활용 의무량 - 재활용 이행량

위반항목(자원재활용법 제 41조)	과태료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제품·포장재 출고량 미보고	1,000만원 이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 미준수 등	300만원 이하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미이행 등	100만원 이하

1)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및 분담금 단가 안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2)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6
 3) 2025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한국의 EPR 비용 구조 알아보기



○○기업 사례

매출액 100억, 출고 포장재 200톤 화장품 브랜드 ○○기업

의무율



0.5

의무량



100t

분담금 단가



100원/kg

재활용기준비용



100원/kg

재활용비용산정지수



1.5

재활용 등급별 포장재 무게

재활용 최우수 : 50t

재활용 우수 : 50t

재활용 보통 : 50t

재활용 어려움 : 50t

*모든 수치는 계산의 용이성을 위해 임의 값으로 설정

Q. 분담금은 얼마일까요?

분담금 = 1천만 원

*분담금 = 의무량 100t x 분담금 단가 100원/kg

Q.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센티브와 재질개선 분담금은?

인센티브 = 1,250,000원

*인센티브 = 재활용 최우수 포장재 무게 50t x 재활용 의무율 0.5 x 분담금 단가 100원/kg x 인센티브 비율 0.5(최대치가정)

재질개선분담금 = 750,000원

*재질개선분담금 =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 무게 50t x 재활용 의무율 0.5 x 분담금 단가 100원/kg x 할증 0.3(최대치가정)

Q. 만약 미이행량이 100t인 경우, 부과금이 얼마일까요?

부과금 = 1,950,000원

*부과금 = 미이행량 100t x 재활용기준비용 100원/kg x 재활용비용산정지수 1.5 x 미이행가산률 1.3(최대치가정)

※ 미이행량 산정방식

1. 재활용 사업장에서 종류 및 재질별로 재활용 비율을 조사¹⁾
2. 생산자의 종류 및 재질별 실적에 비율을 곱하여 이행량을 결정
3. 의무량에서 이행량을 감하여 미이행량을 도출

※ 미이행량 산정방식의 경우, 전체 재질별 재활용률 실적(월별)에 의해 부과금이 결정되어, 기업의 재활용에 대한 비용(분담금, 부과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의 노력만이 아닌, 회수-재활용이 전반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는 전 방위적인 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 기업의 대응전략 KEY POINT!

비용 감축 요건

기업의 대응전략

분담금

포장재 질량 ↓

포장재 절대량 감축을 통한 분담 책임 해소

인센티브

재활용 최우수 포장재 질량 ↑

친환경 포장재 개발을 통한 비용 상쇄

재질개선분담금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 질량 ↓

재활용성 확보(어려움 등급 최소화)를 통한 과금 방지

부과금

미이행량 ↓

재활용 사업장에서 종류 및 재질별 재활용 비율 제고를 위해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 필요

1) 재활용 비율은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

② EU PPWR과 독일, 프랑스의 인센티브 및 벌금 기준

EU에서도 한국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유사하게 PRO가 확장된 생산자 책임의무를 이행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는다. 이때, PRO는 참여 수수료 또는 기여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과정에서, 국가별 기준에 맞추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EU PPWR의 재활용성 등급 기준을 활용하며, 프랑스의 경우, 환경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적용한다.

의무 납부 항목

- 독일 : 참여수수료(Beteiligungsentgelte)
- 프랑스 : 재정적 기여금(Contributions Financières)

폐기물의 예방, 수거, 운송 및 처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금액을 PRO가 조정

 EU PPWR	 VerpackG	 C. env.
제6조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포장 재활용성 성능 등급에 따라 재정적 기여금을 차등 적용 패키지별 재활용 가능한 비율 Grade A ≥95% Grade B ≥80% Grade C ≥70%	제21조 참여 수수료의 생태적 설계 독일의 독점금지법에 따라 가격 설정 시스템이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량화된 산정식을 아직 미제정 ¹⁾ ▲ 인센티브 지급 재활용 재료와 재생 가능한 원자재의 사용을 장려하고자 인센티브 제공할 것을 명시	제541-10-3조 환경 성과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산정식을 아직 미제정 환경 성과 기준 재활용 원료 사용, 재활용 용이성 등 ▲ 성과 충족시, 장려금(Primes) 지급 ▲ 미충족시, 벌칙금(Pénalités) 부과 *판매가격의 최대 20%

PRO의 운영을 위한 참여 수수료 또는 기여금 뿐만 아니라, 위반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 또는 대상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의 경우, 미이행량에 비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시, 납부항목

 VerpackG	 C. env.																		
제36조 벌금규정 Administrative Offence Provisions	제541-9-5조																		
<table border="1"> <thead> <tr> <th>위반 항목</th> <th>최대 벌금</th> </tr> </thead> <tbody> <tr> <td>제7조 제1항 제1호 시스템 참여 요구사항 등 위반</td> <td>최대 200,000€</td> </tr> <tr> <td>제9조 제1항 제1호 등록 요건 등 위반</td> <td>최대 100,000€</td> </tr> <tr> <td>기타 위반</td> <td>최대 10,000€</td> </tr> </tbody> </table>	위반 항목	최대 벌금	제7조 제1항 제1호 시스템 참여 요구사항 등 위반	최대 200,000€	제9조 제1항 제1호 등록 요건 등 위반	최대 100,000€	기타 위반	최대 10,000€	<table border="1"> <thead> <tr> <th>위반 대상</th> <th>최대 벌금</th> </tr> </thead> <tbody> <tr> <td>개인</td> <td>최대 1,500€/단위 또는 톤</td> </tr> <tr> <td>법인(기업)</td> <td>최대 7,500€/단위 또는 톤</td> </tr> <tr> <td>필요 시 일일 강제이행금</td> <td>최대 20,000€/일</td> </tr> <tr> <td>EPR 대상 기업</td> <td>최대 30,000€ *등록·자료 제출·고유식별번호 표시 의무 위반 시</td> </tr> </tbody> </table>	위반 대상	최대 벌금	개인	최대 1,500€/단위 또는 톤	법인(기업)	최대 7,500€/단위 또는 톤	필요 시 일일 강제이행금	최대 20,000€/일	EPR 대상 기업	최대 30,000€ *등록·자료 제출·고유식별번호 표시 의무 위반 시
위반 항목	최대 벌금																		
제7조 제1항 제1호 시스템 참여 요구사항 등 위반	최대 200,000€																		
제9조 제1항 제1호 등록 요건 등 위반	최대 100,000€																		
기타 위반	최대 10,000€																		
위반 대상	최대 벌금																		
개인	최대 1,500€/단위 또는 톤																		
법인(기업)	최대 7,500€/단위 또는 톤																		
필요 시 일일 강제이행금	최대 20,000€/일																		
EPR 대상 기업	최대 30,000€ *등록·자료 제출·고유식별번호 표시 의무 위반 시																		

독일과 프랑스 차이점

독일은 EPR 이행 요건 미준수 정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나, 프랑스는 톤(Ton) 단위로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하므로 양적 측면의 관리 필수

1) ZSVR, Mindeststandard für die Bemessung der Recyclingfähigkeit von systembeteiligungspflichtigen Verpackungen gemäß § 21 Abs. 3 VerpackG, 2025, 6p

③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오리건 주의 분담금과 벌금

캘리포니아 주와 오리건 주에서는 EPR 분담금을 산정하는 기본적 요소로 각 포장재·제품의 공급량과 재질·카테고리별 단가를 고려하고 있다. 재질·카테고리별 단가는 PRO가 재질별로 소요되는 관리 및 처리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오리건 주는 총 60개의 재질에 대하여 산정하고 있다. 분담금은 고정 분담금에 기반하여, 생산자들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감소를 위해 재활용 분담금을 차등화(Eco-Modulation)하여 조정한다. 이러한 인센티브(할인)와 할증(가산)은 생산자들이 더 친환경적인 제품 및 포장재를 설계하도록 독려한다.

의무 납부 항목

분담금 = **각 포장재/제품별 공급량** X **재질/카테고리별 단가** + **Eco-Modulation**

Eco-Modulation

캘리포니아		평가 기준	
시행 첫 2년 동안 재활용성을 개선하는 설계 선택에 따라 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원료 사용 비율 원료 경량화 포장재 재질 표준화 유해물질 포함 소비자 분리배출 개선 인증된 퇴비화 가능 포장재 		

오리건																			
Bonus A LCIA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별 생산자의 인센티브 지급 (환경적 영향이 큰 소재별로 기본 분담금에 '할증'을 추가 징수하여 조성한 후, 같은 소재별로 LCIA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가능. 타 소재간 교차 지원 안됨) 	2026년부터 적용																	
Bonus B 환경 영향도 개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 style="background-color: #00728f; color: white;">환경 영향 저감률</th> <th style="background-color: #00728f; color: white;">인센티브 배수</th> <th style="background-color: #00728f; color: white;">SKU²⁾별 최대 지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728f; color: white;">Tier 1</td> <td>10 ~ 40%</td> <td>2.0</td> <td>\$40,000</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728f; color: white;">Tier 2</td> <td>40 ~ 70%</td> <td>2.25</td> <td>\$45,000</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728f; color: white;">Tier 3</td> <td>≤ 70%</td> <td>2.5</td> <td>\$50,000</td> </tr> </tbody> </table>		환경 영향 저감률	인센티브 배수	SKU ²⁾ 별 최대 지급	Tier 1	10 ~ 40%	2.0	\$40,000	Tier 2	40 ~ 70%	2.25	\$45,000	Tier 3	≤ 70%	2.5	\$50,000	2027년부터 적용	
	환경 영향 저감률	인센티브 배수	SKU ²⁾ 별 최대 지급																
Tier 1	10 ~ 40%	2.0	\$40,000																
Tier 2	40 ~ 70%	2.25	\$45,000																
Tier 3	≤ 70%	2.5	\$50,000																
Bonus C 재사용·리필 가능한 포장재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반영한 평가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재료 비교 (일회용 vs 재사용·리필 가능한 포장재의 무게 및 시스템) 재사용/리필 프로세스, 소비자 여정(소비 후 폐기) 물류 	도입 예정																	

해당 시, 납부항목

내용	캘리포니아	오리건
벌금	최대 \$25,000/일, 반복 \$100,000/일	최대 \$25,000/일
벌금 대상	생산자	생산자
벌금 조건	미보고, 미등록 등	미등록, 미납, 운영 의무 미준수 등
추가 조치	시장 접근 제한	PRO 계획 수정 요구 및 행정처분

1) Lifecycle Impact Assessment, 소재별 환경에 미치는 전 과정 평가를 의미
 2) Stock Keeping Unit, 제품별·포장별 고유 식별 단위

18

3. 이행 프로세스

한국과 유럽(독일, 프랑스), 미국(캘리포니아, 오리건)에서는 EPR 제도의 연간 일정과 운영방식, 이행 프로세스가 상이하다. 한국은 단계별 행정절차에 따라 비용 고지 및 납부 과정을 체계화하여 명료하게 관리하면서, 생산자가 비용 부담과 일정 계획을 상세히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유럽의 경우, PRO가 재활용 의무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PRO 중심으로 실적 보고에 중점을 둔 일정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반면, 미국 오리건 주는, 2025년 7월 1일을 기하여 본격적으로 EPR이 시행되면서, 납부 및 보고 주기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① 한국의 제도절차 및 주요 비용 납부 일정

앞서 재활용 목표율과 의무율, 그리고 분담금과 부과금 산정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어 EPR 제도의 운영 프로세스를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행정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해야 하는 역할들이 부여된다. 주요 비용이 발생하는 단계 및 항목으로는 분담금(3·6·9·11월 분기 고지/납부)과 의무 미달 시 부과금(8월 납부), 재질개선분담금(9월 납부), 인센티브(12월 지급)가 있다.

EPR 제도 절차¹⁾



주요 비용 고지 및 납부²⁾

고지 차수	고지 차수	고지대상	고지금액 산출방법									
3월	1차 (1/4분기)	전년도 분담금 500만원 이상 업체	전년도 분담금의 1/4 금액									
4월	별도	전년도 출고·수입실적 제출(의무생산자→한국환경공단, 4월 15일까지) → 당해 연도 분담금과 전년도 정산금 산출										
6월	2차 (2/4분기)	<table border="1"> <tr> <td>당해 연도 분담금 기준</td> <td>500만원 이상</td> <td>분할납부 대상</td> </tr> <tr> <td></td> <td>500만원 미만</td> <td>일시납부 대상</td> </tr> </table>	당해 연도 분담금 기준	500만원 이상	분할납부 대상		500만원 미만	일시납부 대상	<table border="1"> <tr> <td>당해 연도 분담금 ÷ 3 + 전년도 정산금</td> <td rowspan="2">(1차(3월) 기납부액이 있는 경우, 분담금에서 공제)</td> </tr> <tr> <td>당해 연도 분담금 + 전년도 정산금</td> </tr> </table>	당해 연도 분담금 ÷ 3 + 전년도 정산금	(1차(3월) 기납부액이 있는 경우, 분담금에서 공제)	당해 연도 분담금 + 전년도 정산금
당해 연도 분담금 기준	500만원 이상	분할납부 대상										
	500만원 미만	일시납부 대상										
당해 연도 분담금 ÷ 3 + 전년도 정산금	(1차(3월) 기납부액이 있는 경우, 분담금에서 공제)											
당해 연도 분담금 + 전년도 정산금												
8월	별도	과년도(전전년도부터 과거 5년) 실적 변경으로 공단에서 통보된 업체	과년도 실적 변경에 따른 분담금 차액 및 부과금 배상액									
9월	3차 (3/4분기)	분할납부 대상 업체, 재질개선분담금 대상 업체	잔여 당해 연도 분담금 ÷ 2 + 전년도 재질개선분담금									
11월	4차 (4/4분기)	분할납부 대상 업체	잔여 당해 연도 분담금									
12월	인센티브 지급											

1) 한국환경공단, 2025년 EPR 제도 안내, 18p
 2)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25 EPR 제도 실무 매뉴얼, 53p

② 유럽 EPR 이행 프로세스

유럽에서는 EU PPWR에 따라 당해연도 6월 1일까지 보고 및 서류 제출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미 유사한 일정으로 독일(6월 1일)과 프랑스(5월 31일)에서 운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장 진출 전, 해당 국가의 PRO 또는 생산자 등록부(Register of Producers)에 등록하고, 이후 포장재 사용량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EU PPWR의 이행프로세스

당해연도 (6/1)	<p>당해연도 제출 필수 항목 (제44조 7항, 부록IX 파트B 1항)</p> <p>생산자가 회원국 영토 내에서 처음으로 공급하거나 최종 사용자가 아닌 생산자가 개봉한 포장재의 의 종류별 수량과 무게에 대한 정보(포장재, 포장유형, 형식, 색상 포함)</p>	<p>차년도 의무 대응을 위한 제출 필수 항목 (제44조 8항, 부록IX 파트B 2항) *1년 동안 10톤 미만의 포장재를 처음 제공한 경우</p> <p>생산자가 회원국 영토 내에서 처음으로 공급하거나 최종 사용자가 아닌 생산자가 개봉한 포장재의 의 종류별 수량과 무게에 대한 정보(포장재, 포장유형, 형식, 색상 제외)</p>
	<p>전년도</p> <p>생산자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생산자 책임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 필수 항목</p> <p>회원국에서 회수·재활용 또는 폐기한 포장재(폐기물)의 종류별 수량과 무게에 대한 정보</p>	

 VerpackG의 이행 프로세스

전년도 (12/3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 체결 : 듀얼 시스템 라이선스 체결 2. 등록 : LUCID(중앙 기관 포장 등록부) 등록 3. 보고 : 초기 예측 물량 LUCID에 보고
당해연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분기 마지막 달 15일까지 생산자는 다음 분기 예상되는 포장재 사용량 중간 보고서를 중앙기관에 제출 2. 6월 1일까지 생산자는 전년도 실제 사용 포장재 사용량 연간 보고서를 중앙기관에 제출 3. 6월 1일까지 시스템은 인센티브 이행 상황을 중앙기관과 연방 환경청에 보고 4. 9월 1일까지 중앙기관은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소 표준을 발표
다음연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월 15일까지 생산자는 완전성 선언서¹⁾와 선언서 내 조건들을 증빙할 수 있는 시험보고서를 중앙기관에 보고 2. 대상: 전년도에 일정 기준 이상의 포장재를 시장에 출시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종이류와 유리: 80톤 ↑ ② 경량포장재(플라스틱, 알루미늄등): 50톤 ↑

 C. env.의 이행 프로세스

전년도 (12/3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 : 각 분야 및 제품 범주별로 승인된 PRO 가입 *프랑스 PRO 목록 2. 고유식별번호 발급 : ADEME에서 고유 식별자(IDU, l'identifiant unique) 발급
당해연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월 31일까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자는 전년도 실제 생산 포장재 사용량 연간 보고서를 중앙기관에 제출 → 포장재 종류 및 수량(재질별 질량, 포장 유형); 에코-모듈레이션 관련 데이터(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 비율, 유해물질 포함 여부); 포장재 크기 및 형태(과대포장 여부 확인), 시장 출시 방식(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판매 등) 2. 개별 시스템을 구축한 생산자는 관련 정보를 기관에 제출

1) 완전성 선언서는 생산자가 제출한 포장재 관련 데이터가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문서로, EPR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 PPWR의 Declaration of Conformity와 비슷한 역할을 함.

③ 미국 EPR 일정 개발 프로세스

캘리포니아 주와 오리건 주는 각각 생산자로부터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담금을 납부 받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아직 계획 미정으로, 2027년부터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리건 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먼저 EPR 제도에 대한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주(州)로,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연간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2023

- SB 54 법안 시행

2025

- 생산자: 9월까지 PRO 가입 권장, 11월 15일까지 데이터 제출(생산량 및 포장재 종류) 의무
- PRO: CalRecycle에 통합 보고

120 DAY

- PRO: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CalRecycle에 계획 제출

2027

- PRO: CalRecycle에 3월 1일까지 오염 방지 기금 납부, 7월 1일까지 행정비 납부

- PRO가 오염 방지 기금 및 행정비 납부 이전에 생산자에게 인보이스 발송, 생산자는 이에 대한 분담금을 PRO에 납부
- 납부 경로: 생산자 → PRO → CalRecycle

2024

- 생산자: PRO 가입 시작
- PRO: 7월까지 웹사이트에 물질 리스트 공개

60 DAY

- CalRecycle 내 자문 위원회의 계획 검토 및 심의

90 DAY

- CalRecycle: PRO의 계획에 대한 승인, 거부, 조건적 승인 여부 결정

오리건

3월

- 최초 시행연도: 2025년
- 최종 프로그램 계획 DEQ 승인
- 생산자: 3월 31일까지 2024년 데이터 등록 및 보고 마감

6월

- 최초 시행연도: 2025년
- PRO: 재질/카테고리별 단가 결정 및 생산자에게 인보이스 발행

7월

- 최초 시행연도: 2025년
- 생산자: 분담금 납부
- 프로그램 공식 개시

9월

- 최초 시행연도: 2025년
- PRO: 수집된 분담금 DEQ에 행정비로 납부

10월 ~

- 최초 시행연도: 2025년
- 생산자: LCA에 대한 자료 제출하여 2026년에 지급되는 Eco-Modulation을 받을 수 있음.

- 위의 데이터 제출 및 납부 사이클은 매년 반복
- 공급량 데이터 보고 → PRO 단가 확정 → 인보이스 발행 → 프로그램 시작 및 분담금 납부



결론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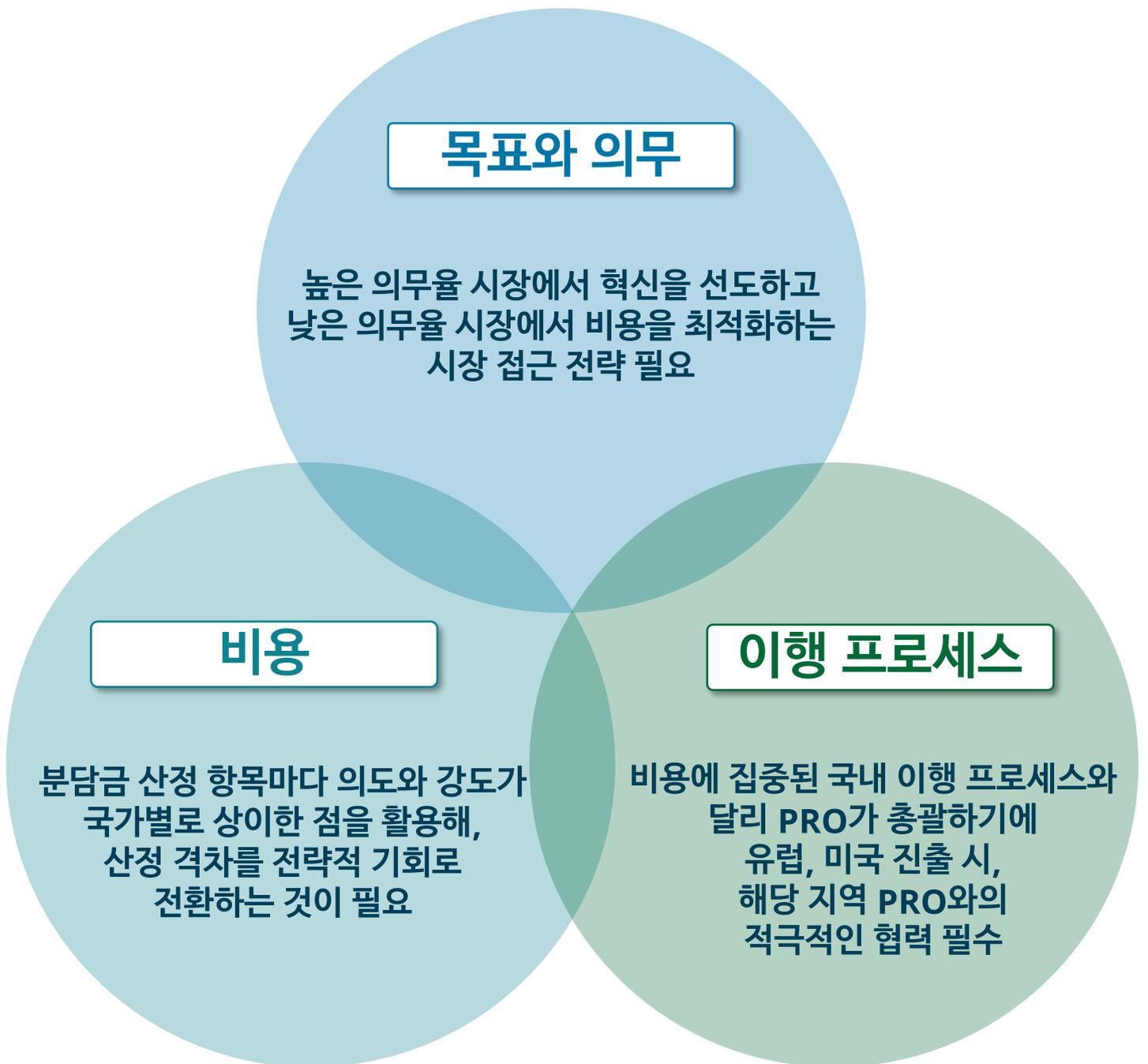
화장품 업계에서의 EPR 제도 대응은 필수적이다. 앞서 살펴본, 재활용 목표와 의무율, 비용, 이행 프로세스의 국가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반으로 향후 대응 전략과 시사점을 총 정리하였다.



EPR 제도 대응에 대한 시사점

화장품 산업의 EPR 제도 대응을 위해서는 ‘재활용 목표와 의무’, ‘비용’, ‘이행 프로세스’ 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에 맞춰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재활용 목표와 의무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재활용 의무율이 높은 시장에서 혁신적 수거·재활용 방안을 선도하고, 재활용 의무율이 낮은 시장에서는 비용 최적화에 집중하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비용 측면에서는 PRO 분담금 산정 항목별로 존재하는 국가 간의 차이와 인센티브 제도 등을 활용하여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행 프로세스 측면의 경우, PRO가 EPR 제도 과정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유럽·미국 시장 진출 시, 해당 지역의 PRO와의 적극적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일괄적이고 단방향적인 대응이 아닌 각국의 규제 수준에 맞춘 개별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서 EPR 등의 화장품 산업 내 정책 및 규제 준수와 비용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https://kcia.or.kr>

2025 대한화장품협회 지속가능위원회



Graphics by Freepik

대한화장품협회의 Cosmetic Industry Insights Report 2025는 Deloitte의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화장품협회 회원들을 위한 ESG 관련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ESG 관련 규제 내용의 경우, 2025년 8월까지의 최신내용으로 구성되었으나, 인증기준, 모범사례, 당국의 지침 및 해석 등 규제환경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규제 환경의 변화·발전에 따라 장래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